

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나537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동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0. 20.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54433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분할 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채무를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2,51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3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은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와 피고의 이익을 초과하는 것이고,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에 공동담보 재산이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로 됨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근저당권의 확정시까지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이므로, 설령 수익자가 취득 후 그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그 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후 피담보채무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위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종국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수익자에 의한 채무 일부의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5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465,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20. 9. 1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되어 2021. 11. 4. 기준 피담보채무액이 452,490,000원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거나 그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를 명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가액반환을 명할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이경선, 판사 김리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 제14층 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월근론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20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977.848㎡

2층 977.848㎡

3층 977.848㎡

4층 977.848㎡

5층 977.848㎡

6층 977.912㎡

7층 977.912㎡

8층 977.912㎡

9층 977.912㎡

10층 977.912㎡

11층 977.912㎡

12층 977.912㎡

13층 977.912㎡

14층 977.912㎡

15층 977.912㎡

16층 977.912㎡

17층 977.912㎡

18층 977.912㎡

19층 977.912㎡

20층 977.9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202.20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 12835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28356분의 122.24. 끝.

